

과 업 이 행 요 청 서

(숙암·번천지구 받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)

2023. 6.

삼 척 시

□ 과 업 명 : 숙암·번천지구 받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

I. 과업의 목적

본 사업은 영농기반시설이 열악하며 집단화된 밭작물 재배지를 대상으로 용수시설개발, 농로정비, 배수로정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영농편의증대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.

II. 과업의 범위

- 지 구 명 : 숙암·번천지구
- 위 치 :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숙암리, 번천리 일원
- 과 업 량 : A = 158ha(2023. 03. 기본계획수립)
- 실시설계(받기반정비) 1식

III. 용역기간

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**180일간**으로 한다(사업시행 동의서 징구, 시행계획승인 절차 기간 미포함)

IV. 과업의 내용

1. 조사측량

- 조사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되 사전에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측량구간 및 범위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실시해야 하며, 그 성과인 관측수부, 계산부, 성과부, 망도의 계산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모든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, 축척은1:1,200 등고선 간격은 1.0m로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·제출하여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2항에 따른 “공공측량 작업계획서”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.
-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「같은 법 시행규칙」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.
- 기존 지하매설물의 현황조사를 면밀히 하여 현황도에 기재하며, 본 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설계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.
- 수준측량
 -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존 성과물을 확인하여 사용하고 지구 주위의 보존될 수 있는 장소에 수준점을 설치하고 보조삼각점에 대하여도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그 기록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기존 수준점은 건교부 B.M 및 T.B.M을 사용한다.

- 종단측량 : 종단측량은 T.B.M에서 시작하여 측정 순위로 표고측량을 하여야 하며 측정 간격은 20m측정을 기준으로 하고 단위는 Cm까지 표시한다. 또한 요철 등의 중요한 부분에는 중간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횡단측량 : 종단측점에서 실시하며 좌. 우순으로 야장을 기입한다.

2. 실시설계기준

- 설계서 작성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작성하고 주요 구조물 및 기계기구별로 구분 작성한다.
- 예정공정표는 최단시일을 계산 수립하되 공사규모 및 기계제작 등 공정별 세부계획을 수립 하고 우천으로 인한 관계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.
- 설계내역서 작성은 정부제정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고 노임은 정부공인시중 노임단가로 작성하며, 자재원가는 조달청 단가를 하고 단가에 없을 시는 건설 물가정보 자료 및 견적서로 작성하되 견적서는 2개 업체 이상 견적을 받아 그중 적은 기준으로 단가로 적용,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구조계산, 수리계산 등 계산서를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프로그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설계단가는 원가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일위대가표와 내역서를 작성하되 비고란에 품목별로 규격 및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.
- 골재 및 자재의 운반거리는 공사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선정하여 공사비가 절감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,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- 주요자재(레미콘, 철근, 아스콘, 관류자재 및 기타)는 관급구입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.
- 설계내역서 작성은 재정경제원 원가방식에 의하여 제경비는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하여 작성한다.
-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
- 수처리 계획에 있어서는 2개 이상 비교 검토하여 유지관리에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을 택하여 적용하되 감독관이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- 설계도서 작성
 - 설계도면작성을 위한 KSA 0005, 토목제도통칙 KSF 1001에 준하며 오토캐드를 사용하여 작성한다.
 - 설계도의 도면은 건설표준 규격 및 토목규정에 의한다.
 - 트레이싱지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은 우리 군에 제출하여 승인된 것을 사용한다.
 - 설계도면상에 측량성과도에 의한 BM, 도근점의 좌표, 표고를 표시한다.
 - 설계도에 각종재료 및 재료규격을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.
 - 설계도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되 축척의 조정 필요성이 있을시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.
 - 1) 위치도 : 1/25,000 ~ 1/5,000
 - 2) 종. 평면 : 1/500 ~ 1/1,000
 - 3) 횡단면도 : 1/100 ~ 1/200
 - 4) 구조물도 : 1/50 ~ 1/100
 - 5) 부대시설도 : 1/100 ~ 1/200
 - 6) 기타 필요한 도면

- 설계도서 작성순서 목록 등 설계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한다.
- 자재는 KS품목이나 최우량 자재를 사용하되 특히 관자재는 각 종류별로 비교 검토하여 경제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선택, 설계에 적용한다.
- 설계예산서 작성
 - 단가산출 : 재료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정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입 작성하고 공정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.
 - 적용기준
 - 1) 설계완료 당해연도 건교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감독관과 협의후 적용한다.
 - 2) 노임은 최근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 한다.
 - 3)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지의 최근호 단가를 적용하되 가격정보지에 기재되지 않은 자재는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2종이상의 물가 정보지에 기재된 가격중 저렴한 가격을 채택하여 계상하여야 한다.
 - 4) 원가계산은 조달청 제정 회계예규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 하여야 한다.
 - 설계예산서 작성시 엑셀 및 EST로 작성하여야 한다.
- 유의사항

도급자는 적절한 시설운영조건의 만족 등 본 시설을 위한 제반 업무에 필요한 모든 조사, 시험 등을 실시하여 충실한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 - 적용기준

도급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의 정부제정 각종 지방서 및 기준에 의거 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지방서 및 기준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.

 - 1) 콘크리트 표준지방서(건설교통부)
 - 2)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(건설교통부)
 - 3)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기준(건설교통부)
 - 4) 철근콘크리트 설계편람(건설교통부)
 - 5)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(건설교통부)
 - 6) 상수도공사 표준지방서(환경부)
 - 7) 상수도 시설기준(환경부)
 - 8) 토목공사 표준일반지방서(건설교통부)
 - 9) 토목공사 표준일반지방서(건설교통부)
 - 10) 도로공사 표준지방서(건설교통부)
 - 11)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
 - 12) 건설공사 안전시공관리 지방지침서(건설교통부)
 - 13) 한국산업규격(K.S)

14) 발토양유실방지시설 계획. 설계요령(안)[2006. 1월 : 농림수산식품부, 한국농어촌공사]에 준하여 토양유실방지 및 흙탕물저감 등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할 것

15) 기타 관련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

• 적용언어 및 단위

1) 본 설계에 적용되는 언어는 특기사항에 없는 한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영문 및 한문을 병기할 수 있다.

2) 사용단위

측정단위는 MKS(Meter-Kilogram-Second)시스템이 기본이다. 모든 압력단위는 절대압과 게이지압으로 구분 표시되어야 하며 계산서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이지 압력을 기본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V. 과업수행 일반사항

1. 감독 및 보고

- 본 과업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.
- 감독관의 요구시 본 과업의 진행사항을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추진사항을 수시 보고 하고 협의하여야 한다.
- 계약 체결후 10일 이내에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 감독관과 협의. 제출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한다.
 - 과업수행계획서
 - 주요 과업내용 및 방침의 설정
 - 감독관의 지시나 과업지시서 이외 과업을 승인 받아야할 사항
- 월간 진도보고는 과업수행기간중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과업추진 및 공정현황, 다음달 과업수행계획
 - 각종 승인사항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
 -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
 - 참여기술자 현황

2. 보안대책

-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도급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용역업무 종사자는 본 용역의 보안책임이 있으며 아울러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모든 성과품은 외부 유출하여서는 안된다.
 -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한다.
- 용역 과업수행 있어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,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,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책임자(정,부)를 지정하여야 한다.

-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,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.
-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.
- 도급자는 성과품을 인쇄할 때 보안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.

3 일반사항

- 용역업무수행자는 제출된 성과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.
- 우리 시와 용역사간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상이한 의견이 있을시 양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되 최종결정권은 발주기관에 있다.
-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우리 시와 협의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의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.
- 본 과업 수행상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과업 내용에 변경이 있을시는 우리시의 방침에 따른다. 단, 과업변경내용이 클 경우 이로 인한 과업기간 및 용역비용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. 조정할 수 있다.
- 본 과업수행 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 기술자의 교체시는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수행 중 용역성과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성금에 대하여는 성과품 또는 원본사진첩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.
- 본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, 인·허가 협의. 심의 등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급자는 제반조치를 이행하고 각종 인·허가 협의 신청서류 및 신청후 보완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은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, 관계법령상 필요한 인·허가 서류작성은 감독관의 지시내용에 의거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과업수행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책임기술자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- 설계변경조건
 - 발주기관의 변경요구로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
 - 과업 중 관련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

- 본 용역비 산출시 적용한 공사비는 추정에 의한 것으로 필요시 정산조치 할 수 있다. 단, 설계변경요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경비(토질조사비, 측량비, 현장조사비 등)는 도급자의 입찰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.
- 보고서 및 각종 설계도서 등은 성과품 인쇄전에 우리군의 승인을 받은후 인쇄 하여야 한다.
- 과업기간 중 완료된 성과품은 설계도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.
- 본 지구의 설계용역은 기 수립된 기본계획서(2018.10/한국농어촌공사)를 기초로 하여 추진한다

4. 성과품 제출

본 과업이 완료되면 각 지구별로 토목공사, 전기공사, 기계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계 완성된 각각의 성과품을 다음의 내역과 같이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측 량
 - 측량원도 및 조서 전량
- 실시설계
 - 설 계 서(시방서+설계예산서+수량산출서+단가산출서+구조수리계산서+ 도면) 합본----- 각 3부
 - 설 계 서(시방서+설계예산서+수량산출서+단가산출서)----- 각 3부
 - 설계도면 (大) ----- 각 1부
 - 설계도면 (小) ----- 각 4부
 - 평면도 (칼라) 1/2,000 ----- 각 4부
 - 현 황 판 ----- 2EA
 - 각종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----- 2부
 - 과업작성디스켓 ----- 각 3매
(설계도, 내역서자료 CD로 제출)

5. 기타사항

-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본 지시서에 명기치 않은 사항이라도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하도급은 일체 금한다.
- 제 성과품은 사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인쇄, 청사진,프린터 등 제작한다.
- 제 계산서 및 내역서 작성은 EST 및 엑셀로 작성하고 설계도서는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
- 각 관정내 지하수 펌핑에 사용될 모타펌프 적용용량에 대하여 기술적, 학술적 근거에 의한 용량산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본 사업은 계약심사 대상사업으로 용역준공검사 후 "강원도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"에 의거 계약심사 결과가 반영된 설계서를 최종 납품하여야 함.